

제3단계 가격자유화의 실시내용

I. 가격자유화 추진경위 및 실태

1. 추진배경

- 그간 우리의 보험요율체제는 사전에 정부가 인가한 요율을 모든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가요율과 협정요율체제가 주류를 이룸
 - 이는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가격의 적정성 규제를 통해 보험산업을 육성하고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보험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반면, 최근에는 경제전반에 걸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자유화 및 개방화등으로 대변되는 보험시장 환경변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협정요율이라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가격체제로서는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권이나 외국보험사와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게 됨

- 이에 정부에서는 '93년 12월, 가격경쟁을 통한 보험회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보험자유화의 핵심인 보험상품 가격자유화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기에 이룸
- 다만, 가격자유화는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종목별 또는 요율의 구성요소별로 각각 2년간 「범위요율」을 실시한 후 「자유요율」로 이행토록 함
 - 범위요율 : 일정 범위내에서만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요율책정이 가능한 제한적인 경쟁요율체제
 - 자유요율 : 보험회사의 요율책정에 최대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자유로운 요율경쟁이 가능한 체제

2. 추진일정

- '96년 3월 23일 제3단계 가격자유화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조정된 자유화 일정은 아래와 같음

(표 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일정

구 분	제 1 단계 (94년 4월)	제 2 단계 (95년 4월)	제 3 단계 (96년 4월)	제 4 단계 (97년 4월)	제 5 단계 (98년 4월)
일반 손보	선박, 운송, 기업성특종 (범위요율)	화재, 적하, 가계성특종 (범위요율)	선박, 운송, 기업성특종 (자유요율)	화재, 적하, 가계성특종 (자유요율)	-
자동차 보 험	할인할증율 (범위요율)	가입자특성율 (범위요율) '95.8 시행	기본보험료 (범위요율) '95.8 시행 할인할증율 (자유요율검토) '95.8 시행검토	가입자특성율 (자유요율검토)	기본보험료 (자유요율검토)
장기 보험	예정사업비율 (범위요율)	-		예정위험율 (자유요율)	예정사업비율 (98이후 검토) 예정이자율 (98이후 검토)

※ '93.12 당초계획에서 그간 일정을 조정한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94. 7 조정 : 조기경쟁력 강화 및 보험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정 조정

- 일반손보 주택화재등에 대한 범위요율 : '96. 4 → '95. 4 (1년 앞당김)

- 자보 개별적용율(개인용)에 대한 범위요율 : '96. 4 → '95. 4 (1년 앞당김)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 : '97.4 → '96.4 (1년 앞당김)

- 장기 예정위험율·이자율 : '96.4 범위 시행 및 '98이후 자유 검토(신설)

○ '95. 3 조정 : 자보 제도개선과의 연계시행을 위해 일정조정

· 자보 개별적용율에 대한 범위요율 : '95.4 → '95.8

○ '96. 3 조정 : 자보는 제도개선과의 연계시행을 위해, 장기는 생명보험 자유화 일정과 맞추기 위해 일정조정

- 자보 기본보험료에 대한 범위요율 : '96.4 → '96.8로 조정

- 장기 예정사업비율에 대한 자유요율 : '96.4 → '98이후

예정위험율에 대한 범위·자유요율 : '96.4 범위요율 → '97.4 자유요율

예정이자율에 대한 범위·자유요율 : '96.4 범위요율 → '98 이후

3. 추진실태

○ 일반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그간 시행되어온 범위요율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종목간 편차는 있지만 가격자유화 시행전에는 손해보험 영업의 극심한 경쟁현실에 비추어 대부분 범위의 하한선까지 요율이 인하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 실제 결과는 전체적으로 할인추세가 입증되었을 뿐, 계약자에 따라 할증한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 '94년 4월 범위요율 도입종목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범위요율이 적용된 10,985건 가운데 할증계약건수가 1,211건으로서 11.0%를 차지

(표 2) 일반손해보험 범위요율 적용실태(보험료기준)

구 분	범위폭	표 준 보험료	적 용 보험료	도 입 효 과	
				금 액	비 율
선박, 특종등	±5~10%	2,140억	2,089억	-51억	-2.4%
화재, 적하등	±5~15%	2,846억	2,730억	-116억	-4.1%

- 주) 1. 출처 : FY'94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및 FY'95 기초통계자료(보험개발원)
 2. 선박, 특종등은 범위요율도입 전종목의 FY'94 실적임.
 3. 화재, 적하등은 상해(보통·해외)를 포함한 FY'95.4~9의 추정실적으로서 보험개발원 기초통계자료로부터 추출

(표 3) 일반손해보험 범위요율 적용실태(계약건수기준)

구 분	총계약건수	표준요율 적용건수	범위요율 적용건수	
			건 수	비 율
선박, 특종등	32,177	21,192	10,985	34.1%
화재, 적하등	1,062,805	515,212	547,593	51.5%

- 주) 1. 선박, 특종등은 보험개발원에서 범위요율도입 전종목의 FY'94.4~5 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2. 화재, 적하등은 상해(보통·해외)를 포함한 FY'95.4~9의 추정실적으로서 보험개발원 기초통계자료로부터 추출

- 이상과 같이 비록 일정 범위내의 요율경쟁체제이긴 하나 요율책정의 자율성이 위험도에 따른 요율수준의 차별화등으로 건전하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일반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실시내용

1. 기본방향

- 자유요율제는 범위요율제를 통해 이미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된다는 점과 OECD가입 등의 대외적 환경 및 보험산업의 각종 자유화계획, 즉 Cross-Border의 허용,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및 「재보험 국내우선 출재제도」의 폐지등 재보험 완전자유화, 독립대리점제도의 본격화 및 Broker제도의 도입등 보험산업 자유화 일정을 볼때 전면적인 경쟁원리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타금융상품의 가격과는 달리 보험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즉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세계각국에서 보험산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와 간섭을 행하는 이유는 주지하고 있다시피 보험산업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보험계약의 복잡성과 보험상품가격의 예측원가로서의 특성 때문임
 - 따라서 보험요율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보험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만 요율자유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 이상과 같은 취지를 반영, 일반손해보험에 자유요율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설정한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건전한 가격경쟁을 통해 보험산업의 효율성과 계약자의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효경쟁의 여건을 조성
- 둘째, 기초통계의 부족, 회사별 실적편차 및 업계의 수용능력등 현실적인 보험시장 여건을 고려
- 셋째, 자유요율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과당경쟁에 의한 요율덤핑 및 과도한 요율적용에 따른 계약자 보호대책 강구,
- 넷째, 동질위험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차별적용 방지대책 마련

2. 자유요율제 시행규모

- 일반손해보험 분야에서는 '94년 4월 범위요율이 도입되어 2년이 경과한 18개 보험종목에 대하여 자유요율을 도입, 시행
 - 일반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94 기준으로 총 1조 8,576억원으로서 손해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8조 1,900억의 22.7%를 차지
 - 이중 이미 재보험자 제시요율을 사용함으로써 자유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규모는 5,763억원임
- 따라서 그간 협정요율로부터 가격자유화에 따라 범위요율을 사용한 보험료규모는 1조 2,813억원으로서 이중 2,089억원이 금번 '96. 4. 1부터 시행된 자유요율의 대상임

(표 4) 제3단계 가격자유화 대상

3단계(자유요율) : '96.4	4단계(자유요율) : '97.4	자유요율 (재보험자 요율)
2,089억원(11.2%)	10,724억원(57.7%)	5,763억원(31.0%)
선박, 배상책임보험 등 18개종목	적하, 화재, 상해 등 일반손보 전종목	500톤이상 선박, 대형건설공사보험등

3. 자유요율 시행방안

가. 보험개발원의 표준요율 및 범위폭 제시

보험개발원에서는 매년 전체 보험회사의 최근 5년간 실적통계를
기준으로 보험종목별 “표준요율과 상하 일정범위폭”을 산출하여
재정경제원에 신고한 후 보험회사에 권고요율로 제시함

① 요율책정의 자율성과 대수의 범칙

- 자유요율제하에서 요율산출은 이론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적 일임되
어야 하나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아 보험회사가
자사의 실적만으로 합리적인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임
(금번 자유요율 시행종목중 실적이 있는 13개 종목의 71개 위험단

위중 6개종목 18개 위험단위만이 대수의 법칙 적용가능)

- 즉,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위험단위별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율통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적통계가 미미한 실정
- 이와 같이 보험회사별로 적정요율을 산출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론에 충실한 자유요율제를 도입할 경우 과다요율 책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어렵게 되고 요율덤핑등으로 보험사업자간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시장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이 있음.

② 자율적인 요율책정의 한계를 보완

- 이와 같은 현실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요율의 예측원가로서의 특성상 관찰치가 많을수록 관찰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대수의 법칙에 근거, 보험개발원에서 보험회사 전체의 통계에 기초한 요율을 산출, 충분한 유효경쟁이 가능한 일정범위로 제시함으로써
- 동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요율책정을 통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또한 동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인가규제도 두지 않음으로써 인가규제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③ 표준요율의 제시형태 : 영업보험요율

- 표준요율과 범위폭을 영업보험요율로 제시하게 된 것은
- 손해보험 요율관리규정상 영업보험요율을 제시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 순율만을 제시할 경우 회사별로 통제가능가격인 부가율을 중심으로 요율경쟁이 이루어져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험회사별 규모의 경제 여하에 따라 처음부터 요율경쟁의 형평을 기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현행과 같이 회사별, 보험종목별로 객관적인 사업비 배분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자의적인 사업비 책정에 따라 요율수준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등 불합리한 소지를 안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④ '96. 4 적용 표준요율 및 범위폭

- '96. 4. 1부터 적용될 표준요율은 가격자유화 환경조성을 위해 이미 '95. 8. 16자로 요율조정한 바 있는 범위요율제 하에서의 표준요율로 함
- 범위폭은 법령상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보호를 위해 $\pm 15\%$ 로 범위폭을 비교적 적게 설정하고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예정사업비율을 감안, 경쟁의 촉진 및 탄력적 요율적용이 가능토록 $\pm 30\%$ 로 설정함
- 이러한 내용은 이미 개발원의 기초서류 일부변경신고(보험개발원 손보 532, '96.3.28) 및 신고수리(재경원 보험 45421-105, '96.3.29)를 통해 요율서에 반영한 바 있음

(표 5) 주요보험종목별 상하 일정폭

보험종목	현행 범위	제시요율	예 정 사업비율	비 고
선박	$\pm 5\%$	$\pm 30\%$	20%	cross-border 허용
운송	$\pm 10\%$	$\pm 30\%$	45%	
가스사고	$\pm 10\%$	$\pm 15\%$	25%	의무보험
영업배상	$\pm 5\%$	$\pm 30\%$	35%	
선주(유도선)	$\pm 5\%$	$\pm 15\%$	35%	의무보험(유도선)
도로운송	$\pm 5\%$	$\pm 30\%$	35%	
근재	$\pm 5\%$	$\pm 30\%$	25%	
체육시설	$\pm 5\%$	$\pm 15\%$	25%	의무보험
기계	$\pm 5\%$	$\pm 30\%$	35%	
조립	$\pm 10\%$	$\pm 30\%$	35%	
건설공사	$\pm 10\%$	$\pm 30\%$	35%	
도난	$\pm 5\%$	$\pm 30\%$	55%	
동산종합	$\pm 5\%$	$\pm 30\%$	45%	

나. 보험회사의 요율산출 및 적용

보험회사는 제시된 표준요율과 상하 일정범위폭 내에서 자율적으로 요율을 산출, 적용하고 동 범위를 벗어나는 요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시된 요율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정사용의 경우는 감독원에 사후보고토록 함

① 요율책정의 자율성 확보

- 자유요율제가 범위요율제와 구분되는 점은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요율책정이 전면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으로서 금번 자유요율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 개발원이 제시하는 표준요율과 범위폭은 보험회사에 대한 권고(참조)용일 뿐 원칙에 부합하는 한 보험회사는 표준요율을 수정하여 자사의 실적에 따라 범위폭을 초과하는 요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② 사용후 보고제(Use & Report)의 운영

- 회사별 요율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더라도 자유요율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에 대한 과도한 요율의 적용 및 요율덤핑등 과당경쟁의 문제 등을 고려, 표준요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의 내용을 감독원에 사용후 보고토록 함
-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경쟁요율체제가 반드시 인가규제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자유요율 시행초기임에도 수정요율 사용에 대한 당초 요율관리규정상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한 것은 회사별 요율책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 위한 정책적 조치임
- 그 결과 보험회사가 표준요율을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는 사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표준요율 수정이유서와 개발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험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다. 보험회사의 표준요율 수정

① 수정의 대상

- 보험회사별로 자체실적에 근거하여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요율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체회사의 5개년간 실적통계량 기준으로 대수의 법칙을 충족하는 보험종목(또는 위험단위)을 대상으로 함
- 5개년 보험회사 전체통계에 의해 대수의 법칙이 적용가능한 수는 다음과 같이 실적이 있는 13개 종목 71개 위험단위중 6개종목 18개 위험단위로 나타남

(표 6) 종목별, 위험단위별 대수의 법칙 적용 가능여부

(단위 : 억원)

보 험 종 목		위험단위수	수입보험료 (FY'94)	사고건수 (5년간)	대수의 법칙
해상 보험	선박보험	7	183	359	×
	운송보험	8	58	276	×
배상 책임	영업배상	7	69	4,696	○(5)
	선주(유도선)	3	13	166	×
	도로운송	1	35	1,308	○(1)
	가스배상	11	38	870	○(1)
	체육시설	3	12	447	×
근재보험		7	916	85,047	○(5)
기술 보험	기계보험	1	7	145	×
	조립보험	1	42	158	×
	건설공사	1	6	89	×
동산종합		13	660	12,152	○(5)
도난보험		8	50	1,704	○(1)
계		71	2,089	107,417	(18)

주) 1. 출처 : 연도별 요율검증자료 및 통계연보(보험개발원)

2. ()내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위험단위수임

② 수정의 방법

- 최근 5년간 자사의 실적손해율과 업계 전체의 직전 1년 평균 실적사업비율에 의한 합산비율의 예정율대비 수정토록 함
- 다만, 수리적 기초 이외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요율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보험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토록 하였음

③ 수정요율의 범위폭

- 요율의 수정이 있었더라도 범위폭은 그대로 유효하나 다만, 회사별 요율적용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수정된 요율을 범위폭의 상한 또는 하한으로 운영

④ 수정회수 및 유효기간

- 수정회수는 연 1회로 하고 수정된 요율의 적용기간은 표준요율 수준의 변경 이전까지로 함

⑤ 수정요율의 검증

- 회사별 수정요율에 대한 통계 및 수리적 적정성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검증절차 제도화
- 아직 자유화 시행초기에 있고 보험회사별로 자체적인 요율책정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 요율수준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계약자 보호에 최소한의 자율적 통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정요율에 대한 검증서류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수정요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발급

※ 이상의 운영방안은 「손해보험 요율관리규정」의 개정과 「손해보험 요율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이미 반영한 바 있음

라. 자유요율제 운영시 고려사항

자유요율제의 실시경험이 없는 우리의 현 여건하에서 자유요율제가 부작용 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요율제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강화등 상시감독체제의 전개가 당분간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임

① 회사별 요율적용기준의 운영

- 자유요율의 실시로 회사별 요율적용이 자유화됨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동질의 위험에 대하여 부당하게 요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게 됨
- 따라서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요율차별 적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범위폭내에서 보험회사별 위험정도에 따른 요율적용기준을 작성·운영토록 의무화 하고(1996년 4월 30일까지 동기준 작성) 동내용을 「요율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한 바 있음

② 지급능력제도의 개선 및 경영정보공시제도 강화

- 한편, 자유요율이 실시됨에 따라 보험회사간 요율경쟁이 촉진될 경우 지급능력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경영부실화가 우려되는데 요율책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선진외국에서도 지급능력확보(Solvency margin)가 감독정책의 가장 큰 일부분임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음
- 이와 같이 요율의 자유경쟁은 안정성확보가 충분히 전제될 때만이 그 실효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며 원칙론적으로 지급능력확보 유지가 요율자유화 추진에 있어 부작용에 대한 완충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유요율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계약자보호를 위한 지급능력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부실한 회사가 계약자의 선택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경영정보공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음

Ⅲ.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보험상품 가격자유화는 단계별로 또한 범위요율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자유요율제 시행전까지는 과거 협정요율 적용때와 크게 달라진 상황이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 왔던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향후 2~3년 이내에 전종목에 걸쳐 금번과 같은 자유요율제가 대차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될 것이고
- 이와 함께 Cross-Border의 허용,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및 「재보험 국내우선 출재제도」의 폐지등 재보험 완전자유화, 독립대리점제도의 본격화 및 Broker제도의 도입등 보험산업 자유화 일정이 아래와 같이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거나 예정되어 있어
- 국내 보험시장을 대상으로한 대내외 가격경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른 바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로 진입하게될 전망이다
- 이러한 자유경쟁을 통해 계약자 측면에서는
- 보험회사의 위험정도에 따른 요율차등적용폭이 확대되어 동질 위험집단을 구성하는 계약자간 보험료부담의 적정성이 제고되고

- 보험회사간 효율경쟁의 촉진을 통해 보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등 계약자 이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

(표 6) 보험산업 자유화 일정

구 분	기 시 행	시 행 계 획
재보험 자유화	항공보험('93.4) 해상보험('96.4)	화재·특종보험('97.4)
Cross-border허용	수출적하보험('93.1) 수입적하·항공보험('95.4)	생명·선박·해외여행· 장기상해보험('97.1)
대리점제도 개편	손보 복수대리점('93.4) 생보 복수대리점('94.4) 손보 독립대리점('96.4)	생보 독립대리점('97.4)
보험중개인 제도	-	손보도입('97.4), 생보 도입('98.4), 개방('98.4)
경제적수요심사제	-	외국사설립허가시 심 사제(E.N.T)폐지('97.1)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업	-	개방('98.4)

○ 보험영업 내지는 보험사업 측면에서 보면

- 자유요율제 운영을 통해 위험정도에 따른 탄력적 요율적용이 가능한 관계로 그 동안의 부당한 보험료 할인 및 리베이트제공등 불건전한 보험모집관행이 요율 및 서비스경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 또한 불량계약의 인수기피 또는 우량계약의 과당인수경쟁 유인이 줄어들어 보험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

- 아울러 보험회사는 경쟁시장의 원리상 손익중심의 내실경영이 불가피해지는 관계로 상대적 비교우위종목에 특화하게 되는등 현재의 백화점식 보험영업이 종목별 전략영업의 형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매위험별로 적정 인수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보험인수기법의 선진화 및 위험관리기능의 강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2. 당부사항

- o 우리의 요율제도는 (인가요율과 협정요율로 대변되어 왔으나 금번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자유요율제를 도입한 것은 가격경쟁을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o 동제도가 선진 외국에서처럼 우리의 사회 및 경제환경에 융화되어 우리만의 독자적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 우선 기본적으로 통계적 객관성에 기초한 요율책정이 필요하므로 자유요율제 도입을 계기로 양질의 기초통계자료를 집적하기 위한 전산화체계의 정비와 함께 이를 통한 다양한 통계분석기능 제고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고
 - 회사별 경영성과를 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비 배분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 보험수리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전산개발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소비자의 가격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 및 요율에 대한 소비자의 비교·판단을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필요성은 자유요율제가 요율책정의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유요율제 도입에 따른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경영의 부실등 부작용에 대한 예방은 기본적으로 요율 수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확고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함

- 이상에서 금번 '96.4부터 일반손해보험에 도입된 자유요율제 실시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도 이러한 자율성의 확보와 소비자대중이 경쟁시장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이러한 흐름이 보험산업의 경영위기를 가중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경쟁체제는 그 자체의 자극기능을 통해서 비용 또는 경영의 합리화등 조정기능을 발휘하므로 보험회사는 기존의 관행적인 경영체제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우리 보험산업의 질적성장과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면 함

(참고자료) 외국의 자유요율제도

1. 미 국

- 요율산출기관인 ISO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종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영업보험요율이 아닌 순보험료 해당비용인 Prospective Loss Cost(예측보험금 원가)를 산출, 회원회사에 권고(Advisory)함
 - 각 보험회사는 ISO가 제시한 예측보험금 원가를 자사실적과 대비하여 자사고유의 보험금원가를 결정하므로 ISO의 Prospective Loss Cost에 대한 준수의무는 없음
 - 이렇게 산출된 자사고유의 보험금원가를 역시 자사실적에 기초한 사업비 및 이익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예정손해율로 나누어 영업보험료를 산출함
 - 한편 대형회사는 ISO의 예측보험금 원가를 수정해서 사용하는 외에 일부종목의 경우 동원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요율을 산출하기도 함
- 위와 같이 요율의 책정이 회사별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요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가절차를 통한 요율규제제도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보험회사의 자유로운 요율적용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요율정책이 이행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70년대말과 80년대초 고금리에 따른 현금중시의 영업정책(Cash

Flow Underwriting)여파로 인한 보험영업 손실의 발생과 80년대 중반의 배상책임보험 위기에 의한 보험상품의 구입불능(Unavailability) 문제 및 과도한 보험료 수준(Unaffordability)의 문제로 요율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고 현재는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사전인가제도(Prior Apporoval)와 신고후 사용제도(File & Use)가 대중을 이루고 있음

-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47년부터 No File제를 채택하였으나 자동차보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여파로 1989년 대부분의 손해보험 종목에 대해 사전인가제를 채택함
- 뉴욕주의 경우는 1970년 신고불요제를 채택해오다 배상책임보험위기의 여파로 1986년부터 동종목에 대해 범위요율제(Flex Rating System)를 적용하고 있음
- 뉴욕주의 Flex Rating System : 이 시스템에 따르면 보험법상 2가지의 범위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한 종목에 있어 1년동안 사전인가없이 보험사업자가 자사의 보험요율을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 폭으로서 종목별로 $\pm 10\%$ 내지는 $\pm 30\%$ 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요율적용폭으로서 $\pm 20\%$ 범위내에서는 사전인가 없이 요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음. 예컨대 어떤 보험종목의 범위폭이 $\pm 15\%$ 인 경우 각 보험회사는 최대 $38\%(=1.15 \times 1.20)$ 까지 사전인가 없이 요율을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경우이던 신고후 사용을 전제로 하며 범위폭을 초과하는 요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12개월동안 3회를 초과하여 요율을 조정한 경우 등에는 사전인가를 받아야 함
-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1971년 이후 요율규제법이 전혀 존재치 않

는 자유요율환경(No Rating Law)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1971년 이전의 사전인가제와 비교해 볼 때 보험회사의 영업성과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고 함. 미국과 같이 자유경쟁을 경제의 기본이념으로 하고있는 나라에서도 요율제도에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주가 일리노이주 하나뿐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영 국

- 영국은 전통적으로 공시주의의 보험감독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험요율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가장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 종전에는 Fire Offices Committee가 화재보험에 대하여, Accident Offices's Association이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회원간 협정(Tariff) 형태의 영업보험료를 제시, 요율의 협정을 행하였으나
- 자동차보험의 요율협정은 비협정회사와의 과당경쟁으로 1969년 폐지되었고, 화재보험의 경우도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85년에 협정이 폐지되고 FOC는 해체됨
- 현재에는 영국보험자협회(ABI)가 요율형태가 아닌 회사별 요율산출에 참고가 될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요율의 책정은 보험회사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요율에 대한 감독은 Solvency Margin을 중심으로 한 사후감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3. 일 본

- 현행 일본의 요율제도는 산정회요율과 업법요율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산정회 요율은 요율산출단체가 손해보험 요율산출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장대신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요율로서 자동차, 화재, 상해보험등에 적용되며 요율의 운용형태로서 범위요율제도가 1951년에 도입되었으나 1990년이 되어서야 화재보험과 상해보험등에서 시행됨
 - 업법요율은 보험업법 및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험회사가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요율로서 범위요율 또는 표준요율이 대중을 이루고 있음
- 최근의 보험업법 개정(1995.6.7 공포, 1996년중 실시예정) 등을 통해 요율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됨
 - 첫째는 신고제의 도입으로 종래 요율은 모두 대장대신의 사전인가가 필요했던 반면 이번의 보험업법개정으로 계약자보호에 소홀할 염려가 없는 분야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함
 - 여기서 신고제는 요율에 대해 대장대신이 신고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후 90일이내(연장 또는 단축가능) 대장대신의 변경명령이 없는 한 신고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말

하는데 신고제 도입에 있어서도 계약자들이 보상내용이나 적절한
요율수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으로 보임

- 다른 하나는 순율산정회제도의 도입으로서 종래의 산정회제도는
영업보험료율에 대해 산정회가 요율을 산출하여 회원인 손해보험
회사가 사용의무를 지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의 개정으로
계약자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없는 분야에 대해 순율산정회제도를
도입함

- 순율산정회제도는 산정회가 산출한 순율부문에만 사용의무를 부
과하고 부가율 부문은 권고요율이 되어 산정회가 산출한 부가율
의 상하 일정범위내에서 각사가 자사의 부가율 실정에 맞게 요
율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우선 화재보험의 대규모 기업물
건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임

4. 우리나라와 외국제도의 비교

① 권고요율의 제공

- 선진제국의 요율제도를 고찰해본 결과에 의하면 요율산출기관이나
사업자단체등에서 그것이 요율의 형태이던 요율산출에 필요한 통
계의 형태이던 실질적으로 전사평균의 요율을 권고(Advisory)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요율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이는 보험요율이 위험과 손해에 관한 대량의 관찰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 산출되는 데 따른 것으로 적정한 보험료의 산출을 위해서는 사업자간 일정한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② 권고요율의 제시형태

- 권고요율을 제시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주로 순율부문에 국한하여 단일요율로 제시함으로써 경쟁의 대상을 부가율중심으로 운영하는 결과, 비교적 이론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권고되는 순율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회사의 자율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를 보면 권고요율이 단일요율이 아닌 표준요율과 상하일정폭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며 이는 미국 뉴욕주의 범위요율제(Flex rating system)와 일본의 부가율에 대한 자유화시스템과 유사함
- 아울러 제시형태가 영업보험요율이긴 하나 범위폭을 예정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설정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부가율을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선진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

③ 요율책정과 인가제도

- 인가절차의 면에서 볼 때에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선진외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엄격한 인가규제를 행하고 있음.
- 즉, 미국은 경쟁요율시스템의 역사가 오래된 반면 보험회사가 자

사요율을 책정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전인가(Prior Apporoval)나 신고후 사용제도(File & Use)의 절차를 밟아야 함

- 뉴욕주의 범위요율제하에서도 일정범위내의 요율책정은 신고후 사용으로, 범위를 초과하는 요율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정범위내의 요율책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회사별 요율적용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요율의 사용에 대해서만 사용후 보고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요율인가체제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보다 자율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금번 우리의 손해보험에 도입된 자유요율제는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진전된 형태라 할 수 있음
 - o 다만, 외국의 자유요율제는 요율산출단체의 요율이나 보험사업자 공동행위를 독과점 카르텔의 형성으로 파악, 시장경쟁의 원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출발한 반면,
 - o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방화 물결에 따른 자유화 압력에서부터 요율자유화가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자유화의 정도와 완급은 우리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기초에 맞게 뿌리내리도록 정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제2주제 : 제3단계 가격자유화와 업계의 대응방안

< 목 차 >

1. 머리말	35
2. 제3단계 가격자유화의 내용	36
3. 가격자유화에 따른 영향분석 및 문제점검토	38
4. 업계의 대응방안	46
5. 결론	49

동양화재해상보험(주)

김종천 이사

제2주제 : 제3단계 가격자유화와 업계의 대응방안

1. 머리말

최근 금융환경은 WTO체제의 출범, OECD의 가입입박 등으로 국제화,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시장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자유화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그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손해보험 제3단계 가격자유화가 시행되어 선박보험 및 기업성 특종보험에 대한 자유요율제가 도입되었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적하, 화재 및 가계성 특종보험도 자유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전면적인 가격자유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바야흐로 손해보험시장환경이 손보사들의 자율경영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각 보험사의 경쟁력 여하에 따라 성장과 쇠퇴의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지게 되는 현실이다.

사실 가격자유화는 여타 일반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에도 상품의 가격산정에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가격체계의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에 의해 가격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 유지됨으로써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상품의 적정가격부담, 요율의 공평한 부담을 가능케하고, 보험사업자에게는 실적손해에 의해 신속한 가격조정을 가능케하여 보험서비스의 질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고 또한 통계관리, 분석, Underwriting기법 개발등 기술개발을 촉진하

여 보험회사의 경영관리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가격자유화에는 이와 같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많은 문제점들도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가격자유화는 손해보험산업의 선진화,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만이 그 산업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안정된 시장이 구축된다면 우리는 명실공히 보험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업계는 이 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적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제3단계 가격자유화의 내용

(1) 추진상황

- 93. 12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계획』에 따라 국내보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94. 4. 1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보험종목별로 2년간 범위요율을 실시한 후 자유요율 형태로 이행한다.
- 제 3단계 가격자유화 대상종목(일반 손해보험)

금년도 시행대상종목은 선박보험, 운송보험등 13개 종목으로 연간보험료 규모가 2,089억원이며, 이들 종목은 94. 4. 1부터 범위요율을 시행하여 왔다.

(2) 자유요율의 운영

가. 보험개발원의 표준요율 산출제시

보험개발원이 매년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최근 5년간 실적통계를 기준으로 보험종목별 표준요율과 일정범위폭을 산출하여 재정경제원에 신고한 후 보험사에 표준요율로 제시한다.

(표 1) 종목별 범위폭

(단위 : %)

종 목	상하폭	종 목	상하폭	종 목	상하폭
선 박	±30	도로운송	±30	건설공사	±30
운 송	±30	근 재	±30	도 난	±30
가스배상	±15	체육시설	±15	동산종합	±30
영업배상	±30	기 계	±30		
선주(유도선)	±15	조 립	±30		

나. 보험회사의 자기회사요율 산출 및 적용

각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의 표준요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기회사의 실적통계를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요율 시행 초기에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거나 요율덤핑등 과당경쟁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기회사 실적에 기초하여 보험개발원 표준요율을 수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정내용을 15일 이내에 보험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한다.

다. 표준요율의 수정대상

전체보험회사의 5년간 실적통계를 기준으로 대수의 법칙을 충족하는 보험종목(또는 위험단위)를 대상으로 한다(6개종목 18개 위험단위). 전체 보험회사의 5년간 실적통계기준으로도 대수의 법칙을 충족할 수 없는 종목은 개별회사의 통계가 극히 적어 통계로서의 유의성이 없고 이에 따라 적정요율의 산출 및 검증이 어려우므로 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동질위험 계약자에 대한 부당한 요율차별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마다 「위험상태별 요율적용기준」을 제정·운용토록하고 보험감독원은 자유요율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지도토록 한다.

3. 가격자유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문제점 검토

(1) 영향분석

가. 제3단계 자유화 종목별 수지변화 예측

(표 2) 제3단계 자유화 종목별 수지변화 예측

(단위 :백만원, %)

종목	표준요율기준			표준요율 -20%시			표준요율 -30%시		
	보험료	합산비율	수지잔	보험료	합산비율	수지잔	보험료	합산비율	수지잔
선박	18,105	97.8	+398	14,484	122.3	-3,230	12,674	139.7	-5,032
운송	5,895	49.2	+2,995	4,716	61.5	+1,816	4,127	70.3	+1,225
특종	172,592	83.2	+28,995	138,363	103.7	-5,119	121,683	117.9	-21,781
합계	196,592	83.5	+32,388	157,563 (▽39,029)	104.2	-6,533	138,483 (▽58,109)	118.5	-25,288

주 : 1. 보험료 및 사업비율은 업계 94년 경과기준, 손해율은 업계 5년(FY'90~FY'94) 기준이며 공히 보험개발원의 협정통계를 사용함.

2. ()는 표준보험료 대비 감소 보험료임.

3. 특종보험중 의무보험은 일률적으로 15% 감소를 전제함.

1) 보험료 감소추정

각사별로 요율적용지침을 운영, 적정요율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지만 과당경쟁시 보험료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감소폭은 최고 20%에서 30%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표준요율의 -20%기준시 보험료 감소추정 : 390억원(업계)

- 표준요율의 -30%기준시 보험료 감소추정 : 581억원(업계)

2) 합산비율증가 수지적자 전환

현재의 3단계 자유화 대상종목 전체손해율 및 사업비율을 고려하여 볼 때 합산비율은 83.5%로 표준요율의 20%할인을 적용하더라도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여 수지적자로 전환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

로 보인다.

(표 3) 자유요율사용에 따른 합산비율의 변화

구 분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표준적용시	57.8%	25.6%	83.5%
표준 -20%시	72.2%	32.0%	104.2%
표준 -30%시	82.1%	36.4%	118.5%

주 : 1. 손해율은 5년(FY'90~FY'94)평균, 사업비율은 FY'94의 사업비율을 기초로 함.

2. 표준요율의 -20%, -30%적용시 손해율과 사업비율은 보험금과 사업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임.

3) 수정요율 사용에 따른 보험료 추가감소 예상

상기 가, 나,의 경우는 보험개발원이 권고하는 표준요율을 기준하여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여기에 추가하여 각사별 실적에 따른 수정요율 사용을 감안하면 수지적자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수의 법칙이 적용가능한 종목의 수정위험단위는 총18개 위험군으로 각사별로 수정시 표준요율의 인상이 요구되는 위험군은 수정을 하지 않고 표준요율의 인하가능 위험군에 대하여만 요율을 수정함으로써 범위폭이 확대되어 수지악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의 영향은 사별 사업비배분 방식차등과 사업비격차로 상하위사간의 표준요율 자체에 있어 차별화를 가져다줌으로써 상위사의 시장선점이 예상되며 상하위사간 수지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보험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보험산업의 규제요소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보험료를 자유화함으로써 기존의 경쟁상황과와 다른 새로운 경쟁양태가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계약자 이익증대와 보험사의 경쟁력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반면에,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계약자 피해와 보험회사의 도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게 된다. 금번의 가격자유화 조치는 이러한 경우까지는 상상할수는 없지만 앞으로 가격자유화가 더욱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 문제는 크게 클로즈-업 될 것이다.

1) 긍정적인 영향

① 보험사간 효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계약자 이익도모

가격자유화의 시행은 당장 보험사간 효율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보험료의 인하와 더불어 서비스 개선등 계약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계약의 공시제도를 통하여 보험사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게 됨으로써 기업성보험은 물론 가계성보험시장에서도 보험계약자의 통찰력이 증대되어 과도한 가격경쟁이나 배당경쟁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보험사에 대하여서는 보험가입을 회피할 것이므로 건전한 가격경쟁이 유도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사의 선택기준 다양화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보험사의 가격 및 상품의 국가경쟁력 강화유도

각 보험회사는 가격자유화에 따른 수지감소 부분을 보완키 위해 자체

적으로 사업비 절감을 위한 판매기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또한 가격하락부분을 보전키 위해 투자수익 증대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높은 투자수익이 기대될 때에는 시장지위 증대를 위하여 커다란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높은 투자수익에 의해 그 손실을 메꿀수 있으므로 요율은 인하될 것이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에는 투자수익이 감소되고 인수능력이 축소되므로 요율을 다시 인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자산운용수익율 경쟁, 보험인수경쟁, 보험료 인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가격 및 상품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③ 보험산업의 전문화 및 언더라이팅 기술향상유도

앞으로 가격자유화가 더욱 진전되면 시장의 변화와 아울러 그 성과의 변화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보험산업은 그 특성상 모집경쟁전략보다는 언더라이팅전략, 상품차별화 전략이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손보사가 재무구조의 취약성을 보이는 것은 83년의 자동차보험 다원화 이후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자동차보험 영업확장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언더라이팅은 보험마케팅의 핵심기능이다. 앞으로 가격자유화와 브로커제도의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증대되게 되므로 언더라이팅기법, RM기법, 보유결정기법, 신상품개발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언더라이터를 양성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보험산업의 전문화 및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부정적 영향

① 과당가격경쟁에 기인 보험사 재무구조 부실화 우려

보험산업은 보험가격산정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실패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보험요율은 그 원가가 과거의 동질위험의 손해를, 해당 계약자별 실적에 기초를 두고, 계약자체는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인 것으로, 그 미래는 과거와 같은 수준일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모양의 미래일수도 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최소한의 원가마저도 무시하는 경지에까지도 쉽게 갈수 있는 것이 일반상품과 구분되는 손보상품의 특징 중 하나이다.

미국의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손해보험회사의 도산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요율산정 및 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전체 도산 회사수 372개중 86개사(28%)를 차지하고, 급격한 영업확장이 64개사(17.2%)를 차지하여 전체 150개사(40.3%)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격자유화가 더욱 진전되면 국내보험시장의 현여건을 감안할 때 그 폐해는 심각히 대두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② 손해율 악화에 따른 재보험난항 및 국제적 보험시장 지위 약화

가격자유화의 과당경쟁은 보험료의 감소를 유발하고 곧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보험시장에서의 재보험처리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 할것이다. 이는 해외 부실재보험자에게 출재되는 경우를 가져올 수 있어 곧바로 재보험금 회수불능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보험시장의 국제적 지위약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상하위사의 수지격차심화 및 조직의 이합집산우려

상하위사간 손해율 및 사업비율의 차이에 기인되어 지나친 효율의 할 인적용은 하위사의 경우 수지한계수준을 넘어서는 효율제시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가격경쟁력의 차등을 보이고 사업비 사용에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직의 상위사로의 집중 및 하위사에서의 이탈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직 이르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유경쟁시장이 일부사에 의한 과점시장내지는 독점시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2) 제도시행의 문제점 검토

가격자유화는 자유와 동시에 회사에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자유화로 인하여 효율인하 경쟁이 횡행하고 그 결과 책임준비금이 부실해져 보험금지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자유를 부여 받은 회사에 있는 것이지 가격자유화를 시행한 정부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철저한 준비속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한다. 따라서 동제도 시행의 몇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효율산출, 분석, 검증에 위한 기초통계 집적미비

업계 대부분이 협정효율 및 해외 구독효율의 적용에 익숙하여 자체 효율산출,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DB 및 기술이 미비한 실정이며 더우기 상품별 정확한 원가분석 개념에 입각한 효율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율검증자료작성시 각사간 업무전산화 정도에 따라

그 정확성에 차이를 보이고 대부분 종목의 요율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수기에 의존하는바 이를 기초한 수정요율의 사용은 다소 착오를 수반할 수 있는바 기초통계작성의 조기전산화를 통한 수정요율 사용에 정확성을 유도함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나. 위험인수기술의 후진성

금번 자유화종목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협정요율 체제하에 가격 및 손해율이 안정됨에 따라 업계 모두 극히 불량한 인수제한 위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요율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격을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종목별 수지를 검토하는 정도의 언더라이팅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개별위험의 위험율에 기초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다.

다. 사별 요율적용기준 차이에 따른 공동인수 계약처리문제

소액계약의 경우 한 계약사에서 전액인수하는 경우가 통례이나 고액물건의 경우 최저요율제시사(최고 표준요율의 30%할인)가 계약을 인수하게 되며, 참여사는 자기회사 지침이나 실적에 따르면 계약이 불가능하지만 영업적인 면에서 부득이 간사사 요율적용에 따라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인바 과연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지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재보험처리시 가격의 형평성문제

가격자유화에 따른 자유요율의 사용은 국내와 같은 시장구조에서 재보험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있다. 다시 말하자면 재보험자는 인수하여야 하는 위험에 대해 전혀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을 인

수하는 원보험사가 부담하는 보유가 크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보사가 보유하는 비율이 10%도 안되는 물건이라면 이는 재보험자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원수사간에 효율경쟁이라도 있다면 재보험자가 받는 가격은 전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최소화하여 결정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하겠다. 가격자유화시기와 재보험자유화 시기의 불일치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4. 업계의 대응방안

최근의 대형 재산보험 계약사례에서 볼 수 있는 지나친 효율덤핑과 같은 현상은 가격자유화 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물론 최근의 이와 같은 현상은 해외재보험시장의 Soft화로 인하여 더욱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보험상품의 특성이 일반상품과는 달리 그 원가가 판매시에는 확실하지 않으며 원가가 완전히 파악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계약에 따라 또는 경쟁상황에 따라 과도한 가격덤핑을 하기 쉽고 아직도 각 보험사는 거수보험료 규모나 시장지위등의 외형실적에 경영성과를 의존하는데도 크게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가격자유화 실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쟁심화 → 효율인하 → 수지악화등의 역기능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가격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1) 언더라이팅 및 위험관리기능의 강화

적정요율 산정 및 보유수준 결정 등 언더라이팅기능의 강화가 앞으로 매우 중대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언더라이팅 서베이의 강화, 분야별전문가 언더라이터 및 위험관리 전문가 양성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계약자성향 및 개별위험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위험인수기법연구 및 통계 DB의 구축은 자유화 대책의 기본 전제조건인 것이다.

(2)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

요율산출의 과학화를 위하여는 정확한 통계의 집적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통계의 공유화, 대량화를 위해 업계공동전산망을 보험개발원을 주축으로 조기에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처리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하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각보험사별로도 자체적으로 요율검증이 될 수 있는 수준의 통계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3) 재보험 capacity의 안정적 확보

가격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불가피한 요율경쟁으로 한계요율이하로 내려갈 경우 양질의 재보험자의 재보험담보력을 계속 활용하기란 쉽지않을 것이고, 만약 해외재보험수지가 악화되거나 해외재보험시장이 하드마켓(hard market)이 될 경우 안정적인 재보험확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보험사의 담보력 확충을 통한 보유증대에 힘을 기울이므로써 점진적으로 국내보유 확대를 기하고 해외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호연속성(continuity)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재보험 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가격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4) 과당경쟁 방지책의 강구

가격자유화는 각보험사의 자율경영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외형위주의 경영에서 내실경영으로 인수정책을 전환하도록 각종 관리지표의 우선순위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관리지표는 시장의 Soft/Hard상황여하에 따라 거시적, 미시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자유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원의 경영평가 항목보완 및 공시강화가 필요하며, 업계공동의 과당경쟁방지를 위한 건전경쟁현장 채택등 자율적 노력이 요망된다.

리베이트제공등 모집질서 문란이라는 고질적 병폐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며, 선진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인 스스로의 자성 및 통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투자전문가 육성

이때까지는 가격은 일종의 정부고시가격으로 그안에 적정한 이윤이 확보되어 있어, 투자수익은 덤썸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가격경쟁으로 영업이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고, 따라서 투자수익의 크기에 따라 동 상품의 경쟁력의 지속성이 결정될 것이다.

(6) 대국민 보험인식 제고

일반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상품으로서 손해보험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이 미약하며, 이로 인하여 가입율이 대다수 종목의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약관의 평이화, 상품 및 요율의 단순화, 상품홍보등에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언더라이팅 서베이의 활성화, 위험관리 등 사전서비스 강화 및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등 사후서비스 강화를 기하여 대국민 보험인식제고를 통한 보험가입의 보편화, 일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5. 결론

가격자유화는 보험사의 실질적인 자유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보험산업은 불완전경쟁의 성격이 강하고 그 공익성과 사회성 때문에 보험요율의 자유화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보험시장의 불완전성, 보험기술 및 담보력의 취약등 그 기반이 아직 규모에 비해 낙후된 실정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격자유화는 전반적인 금융시장개방과 함께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요율제도개선이 시대적 흐름이므로 자유화가 안고있는 많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 보험업계가 현명한 판단과 자세로 부단히 노

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 및 보완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회사가 자유화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건전경쟁상황을 유도하여 새로운 보험환경을 조성하고 정립할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다.

제3주제 : 제3단계 가격자유화와 보험개발원의 역할

< 목 차 >

I. 보험상품과 가격	53
II. 보험의 가격자유화	55
III. 보험의 가격자유화와 개발원의 역할	57
IV. 외국 예	67

보험개발원

이명주 이사

제3주제 : 제3단계 가격자유화와 보험개발원의 역할

I. 보험상품과 가격

1. 보험상품

- 당사자 일방(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보험회사)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무형의 상품.
-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형태 :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보험상품의 가격(요율)

-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지급해야할 위험단위당 가격

3. 보험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상품의 보장내용(보상하는 손해, 지급조건(보험금 계산방식, 공제 조건, 보상한도액 등)
- 실적율(손해율, 사고의 빈도(Frequency), 심도(Severity), 신뢰수준, 손해의 진전, 추세율)
- 예정율(예정가격 : 예정손해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율)
- 자산운용 수익율
- 경제여건(물가, 이자율 등)

4. 보험가격의 산정

- 보험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의 제약조건하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충족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위험에 대한 비용(순보험요율, 영업보험요율)을 예측
- 통상 과거의 자료를 이용, 미래에 발생할 사고의 빈도 규모를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며, 일정수준의 이익을 거둘수 있도록 자산운용수익율, 사업비 등을 감안 적정한 보험료 수준 결정.

Ⅱ. 보험의 가격자유화

1. 가격 협정의 의미(협정요율 사용의 의미)

- 동일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가격을 각각의 보험회사가 사용
- 보험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가 위험에 대한 비용을 예측하는데 있어 자사의 과거의 실적, 영업의 방침 등에 기초하는 경우 신뢰하지 못할 가격산정이 가능하고 이는 보험에 대한 보험수요자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요율의 공정성, 적정성, 안정성이라는 조건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큰 DATA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2. 가격자유화의 의미

- UR협상, WTO체제의 출범, OECD가입추진, 금리자유화, 금융산업간 업무영역 조정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산업의 경쟁력강화는 정책당국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를 시행.
- 보험가격 자유화는 각각의 보험회사가 자사의 여건(과거실적, 경영방침 등)에 부합하는 가격을 자율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하는 경쟁요율체제를 의미.

- 이는 보험가격의 산출을 보험산업에 기초한 것(협정가격산출)이 아니라 각각의 보험회사 BASE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 가격자유화 제도의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가격산정 및 운용에 신축성을 부여.
- 다만, 가격의 적용성 및 안정성(신뢰성)과의 TRADE OFF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음.

Ⅲ. 보험 가격자유화와 개발원의 역할

1. 표준약관의 작성 및 운영

- 표준요율 산출의 근거인 표준약관의 작성 · 제공 필요.
- 표준약관의 제정운영은 보험회사에서의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결과가 됨.
- 동 표준약관은 상품 및 요율의 자유화 시점에 있어서 통계자료의 확보를 위해 필요.

2. 보험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가. 표준요율의 조건

- 위험분류 및 관련 규칙들을 보험회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작성.
- 과학적인 표준요율 산출을 위한 기존의 과거원가 (historical cost) 방식에서 향후 원가 (prospective cost)방식으로의 전환하고, 순보험료 중심의 원가분석을 강화. 즉, 손해액진전추이 (Loss Development)와 추세율(Loss Trend) 등을 반영, 요율이 적용될 시점의 손해상황을 추정하는데 보다 과학적인 방법 사용.

- 요율산출시에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통계적방법 사용의 엄밀성을 높일수 있도록 자료의 신뢰성 감안.
 - 위험분류 체계는 현재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 구분(Classification) 되도록 하고 그 위험도에 상응하는 요율의 적정차등 유지.
 - 이론적 연구와 축적된 자료분석을 통하여 위험분류체계의 요소와 각 등급별 보험료의 차등을 위한 적정성 분석작업 수행.
- 위험도에 따른 적정요율수준의 유지
- 표준요율이 각 위험분류별 평균위험수준에 대한 표준적인 보험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요율조정요인을 충분히 감안하되 요율의 통계적 신뢰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요율 산출.
 - 기준이 되는 표준요율수준 자체가 위험수준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 경우 이 요율이 실제 사용될 때 보험회사는 평균적으로 이보다 높거나 혹은 낮은 수준에서 요율을 적용하게되는 결과, 표준적인 요율로서 의미 상실.
 - 따라서 개발원은 표준요율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인상 또는 인하요인이 유의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며 표준요율의 과도한 변동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요율별 조정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

나. 원수사 가격산정 지원

- 개발원이 표준요율을 제공할 때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통계와 요율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공.
- 보험회사는 전보험회사 기준의 산출통계와 자사의 실적을 비교하고 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요율을 산정하게 되므로 개발원은 보험회사별 통계를 분석하여 전체통계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원.
- 보험요율 산출과정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요율산출방법 및 각 형편에 따라 사용 가능한 표준적인 대안들을 예시, 사별 요율산출시에 감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보험종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추세율반영방법, 손해액진전을 계산방법, 등급별 요율차등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요율산출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담보내역으로 구성되는 보험상품의 개별위험에 대한 위험율과 Package화 된 경우의 총체적 위험에 대한 표준위험율을 산출하여 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가격측면에서 충분히 지원해야 하며, 통계를 집적하는 담보위험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통계를 Mono line 이나 Multi peril line 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

3. 보험가격의 모니터링

- 보험회사별 보험종목별 요율적용수준을 개별계약에 의한 통계로부터 집적하여 전 산업 평균적인 경쟁의 수준을 파악하고 보험회사 및 정책 당국에 이를 제공하여 가격경쟁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제공.
-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자사의 요율수정(deviation)수준(세부위험분류까지)이 업계 전체의 수준대비 어느 정도인지 요율적용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통계는 자사의 경쟁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과다한 경우 평균적 수준을 향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
- 감독당국 측면에서는 보험종목별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통계는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종목별 회사별 요율수정수준과 손해율 비교를 통하여 과다한 요율경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과다한 요율인하가 감지되는 경우 조기에 경보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

4. 통계서비스

가. 양질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구축

- 현재 집적하고 있는 항목들의 적절성 분석은 물론 항목별 코드구

분 적절성 및 정의(definition)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각 보험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의 물리적(physical) 논리적(logical)오류에 대한 검사(audit system) 및 수정(edit)과정의 강화가 필요.

- 종목간 공통 검색기준 작성·운영
- Editing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통보
- 오류자료에 대한 검색기능의 강화
- 통계작성에 관한 일반규칙 제정 운영
- 통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Incentive 제도 도입 운영

나. 원수사의 가격결정을 위한 통계자료의 다각적인 분석 및 제공

○ 보험통계

- 기초통계자료의 분석·제공
- 관련 유사위험 보험통계의 집계·분석
- 기초통계자료의 SUMMARY FILE 관리 제공(축약DB의 운영) : 전산망이용

○ 보험외적통계

- 각종 위험관련 통계자료 수집·분석·제공
- 유사보험(공제통계) 수집·분석·제공

다. 특정시장에 대한 통계분석 제공

확실적인 정보의 제공보다는 보험회사의 틈새시장전략(niche market strategy)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정시장 또는 특정 위험분류에 대한 분석 통계의 제공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상시장(target market)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객지향적 통계 분석 제공.

라. 효율산정을 위한 외생변수(경제여건 등)의 DB화 및 제공

- 자산운용수익 및 사업비 관련 자료의 DB화
- 효율산출과 관련된 경제여건의 시계열 자료 DB화

5.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 제공

- 개별계약자 자료의 DB화
 - 위험분류를 위한 피보험자의 특성 변수의 DB관리 및 제공
 - 개별계약자 자료와 사고자료의 관계형 DB화 및 제공
- 위험분류를 위한 자료의 분석 제공

위험분류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험수리적 기준

(Actuarial Criteria), 운용상의 기준(Operational Criteria), 사회적 통념의 기준(Social Criteria), 법적기준(Legal Criteria) 등의 자료를 분석 제공

◦ 각종 위험도 산정, 제시

- 보험가격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적 데이터이지만, 이로서는 불충분,
- 산업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수반하여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복잡화에 됨에 따라 이를 과학적, 공학적으로 분석 필요.
- 자동차 사고 위험 / 화재위험(건물별,구내별) / 도난위험 / 자연재해 관련 위험 / 직종별 위험 / 상해위험 / 환경정보 등의 기초조사 필요

◦ 기타 정보제공

< 사고자료 분석결과 database >

- 계약자별 보험 실적 정보
- claim 유형별 분석
- 기업성보험 : 대형 claim 사고분 database 구축

< 해외보험 정보 >

해외 보험시장 동향 / 상품정보 / 언더라이팅 동향 / 원보험 및
재보험 시장 동향 / 신기술

< 언더라이터간 정보교환 network >

< 보험통계 자료 >

- 보험통계 정보 (월간, 계간, 연간 정보)

< 기타 정보자료 >

- 해외재보험자 거래정보 : 불량재보험자
- 해외 원보험, 재보험자 재무정보
- 해외브로커 재무정보
- 국내 불량계약자 정보
- 국내 브로커 재무정보
- 기타 필요 정보

6. 전산망을 통한 자료의 제공

- 현행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통계는 전산망을 통한 일부 자동차 보험의 조회자료를 제외하고는 전산 Magnetic Tape/Cartridge 나 책자(통계자료집)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나,
-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통계 서비스가 신속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보다 처리하기 쉬운 형태(format)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통계가 시의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 생산 및 제공 System을 보완하고,
- 또한 업계의 상품 및 가격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개별 계약자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 계약자를 위한 공시정보 network >

- 국내손보사의 정보공시
- 보험회사의 재무정보
- 보험회사의 경영평가 결과
- 보험회사의 상품정보
- 보험회사의 가격정보

7. 기초연구조사

- 사업비 배분기준의 개선

- 사업비 배분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기준 제시.

- 자산운영수익의 예측

- 자산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자산운영수익을 가격결정의 하나의 요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

- 지급여력확보를 위한 기준제시

- 지급여력확보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급불능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작성 제시

- 손해보험 회계규정의 개선

- 요율산출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의 강화를 통하여 요율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

IV. 외국 예

1. 미국 ISO(Insurance Service Office, Inc.)

ISO(Insurance Service Office, Inc.)는 권고요율(Advisory Rate)과 통계, 보험수리, 보험약관 등의 서비스를 자국내 손해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임.

가. ISO의 역할

◦ 양식서비스

ISO에서는 매년 약 7000여개의 행정법안, 1000여개의 개정법률 및 약 500여개의 판결사례를 검토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함.

- 증권양식(Policywriting Form)의 개발
- 법원의 판결, 법 개정, 행정활동의 변화로 인한 현 증권상의 용어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
- 신규산업의 출현, 산업동향 변화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ISO 양식변경
- 주 당국에 신고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신고양식의 준비 및 제출

- 규정서비스

주별 보험관련 법규에 따라 종목별 보험인수관련 규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보험회사가 각 주에서 요구사항에 맞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보험금비용단가(Loss Cost) 서비스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각 보험종목에 대해 적절한 위험분류에 의하여 손해자료를 집계 분석하여 향후의 보험원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함.

- 보험수리서비스

보험회사의 가격결정, 담보위험, 보험인수, 재보험의 필요파악, 위험관리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계된 ISO자료에 수리전문가로서의 판단과 결론과 함께 의견을 제공함.

- 개별회사의 손해실적과 경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사의 실적을 전미 실적과 비교할수 있도록 자료 제공
- 보험종목별로 손해실적과 주요 관계(급별간, 지역간, 보상한도액간, 공제액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모니터하고 종목별 실적을 집계하여 손해의 원인 및 크기 등에 관하여 검증함.

○ 통계서비스

ISO에서는 매년 800여개의 자료제공 회원사로부터 10억 레코드 이상의 자료를 집계 분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각 주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통계를 작성 감독기관에 보고함.

- ISO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요령을 제공하고 계약상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체계적 방법을 유지함.
-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수리상 수정항목별 정의(Definition)를 제공하며 조기에 오류를 확인, 정정할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통계자료의 질을 관리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함.

나. ISO 자회사의 역할

1) ISO Commercial Risk Service, Inc.(CRS)

- CRS는 각 보험회사가 인수할 위험을 평가하고 독자적으로 가격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지역별 실적, 분류체계, 보험금비용단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CRS에서는 매년 500,000 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150만 이상의 물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율산출 및 언더라이팅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2) ISO Telecommunication, Inc.(ISOTEL)

ISOTEL은 ISO의 전산체계를 발전시키는 물론, 업계 전산망을 강화 또는 확충하여 업계전체의 편리를 도모하고, ISOTEL의 전산망을 통하여 회원회사에 권고요율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함.

3) ISO DATA, Inc.

정책상의 현안사항 조사에 관한 상담을 함.

2. 일본의 손해보험요율산정회

◦ 요율검증 및 요율개정

현행의 요율을 산출한 시점에서 예측한 요율수준을 실제의 실적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행의 요율수준을 개정함.

◦ 보험요율의 산출 및 당국에 대한 인가신청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 대장대신에 인가를 신청하고 일간신문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요율의 투명성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보험통계의 작성

- 회원회사로부터 보험종목별로 요율산출 및 검증에 필요한 통계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계를 수집하고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험년도별로 보험통계를 작성함.
- 이 통계자료는 요율산출 및 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보험회사 및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표준보험약관의 연구 및 개발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표준보험약관을 개발하고, 판례의 동향 및 제 외국의 보험약관의 조사·연구를 하고 있음.

○ 각종 위험도의 산정

- 장래의 사고발생을 및 손해액을 예측함에 있어 과거의 통계자료가 중요하지만, 산업구조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의 출현 및 복잡화에 따라 과학적, 공학적 위험분석이 필요하게 되므로, 각종 위험에 대한 위험분석 및 새로운 요율산출방법의 개발에 관하여 조사 연구를 행함.
-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재해과학연구회(41명의 전문가로 구성)는 기상재해, 건물, 화학, 산업재해, 정보통신의 5개 분과회로 구성되어 그 연구

결과인 「재해의 연구」를 발간하고 있음.

○ 손해의 예상 및 경감대책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방재에 관련된 위원회 및 연구회에 참석하여 국내외의 안전·방재에 관한 법령기준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원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회원사의 위험관리에 일조하고 있음.